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맞게 구성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안내했던 지침 등의 내용은 동 지침에 포함하였으며, 각급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2판)

2020. 5. 7.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전체	용어 변경	•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용어 변경 • “개학”을 “등교수업”으로 용어 변경 • 문맥에 따라 “유증상자”와 “의심증상자”로 다르게 사용된 용어를 “의심증상자”로 통일 (방역당국 지침에 사용된 용어 제외)
	의심 증상자 관리원칙 변경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관리방안 변경 – 등교 전 의심증상자 발견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안내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 38도 이상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Ⅰ. 목적 및 기본원칙	(p.1)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분류체계 추가(제1급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p.3) 신설	• 등교수업 시작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진료의뢰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p.4) 개정	• 코로나 예방을 위해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음식 나눠먹기’ 추가
	(p.5) 신설	• 신체활동 또는 식사 후 발열증상 확인 시 10~30분 정도 안정 취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재측정 기준 추가 •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추가
	(p.6) 신설	•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중인 가족(동거인)이 격리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는 내용 추가
	(p.6) 개정	• 전담관리인의 관리기간 명확화(해당기간 → 등교중지기간/출근중지 기간)
	(p.7) 신설	• 불가피하게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가동
	(p.7) 신설	• 스스로 본인 책상을 닦도록 매일 지도·안내하는 내용 추가 • 방역물품에 책상 등 소독할 수 있는 알콜티슈 등 추가
	(p.8) 개정	• 생활 속 거리두기 학교운영 예시에 책상 닦기 • 마스크 착용 및 착용시 주의사항 추가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Ⅲ. 평상시 대응	(p.9) 신설	•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현황을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Ⅳ.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p.13 ~ p.14) 개정	• 등교·출근중지(격리) 유지기간 수정 – 검사중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 양성(확진) : 보건당국 격리기간(자가격리 기간 포함) 동안 – 음성 : ①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14일 동안 ②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 아니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③ 그 밖의 경우는 등교·출근 가능
	(p.14) 신설	• 참고자료(의사환자 격리해제 및 관리방안) 추가
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p.15) 개정	• 확진환자 발생시 모든 학생 귀가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대응체계 변경
	(p.15) 신설	• 참고자료(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추가
	(p.16) 개정	• 참고자료(시설이용 제한 조치)에 시설이용 제한 기간 설정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주의사항 추가
참고	개정	• [참고2] 발열 등 유증상 학생에 대한 조치내용 변경(귀가조치 →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참고6] 시설이용 제한 조치의 일반원칙 추가 • [참고7]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하는 내용 추가 • 학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과정(기존지침의 참고14) 삭제(별도 역학조사 지침으로 안내)
	신설	• [참고11] 코로나19 학교생활 수칙 추가
서식	개정	• [서식1] 해외여행력 및 해열제 복용여부 확인란 추가하고, 모바일 또는 PC를 활용한 일일점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선별진료소 방문할 때 제공하도록 수정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원칙 ····· 1

1. 목적 ····· 1

2. 기본원칙 ····· 2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2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4

Ⅲ. 평상시 대응 ····· 9

1. 등교 전 ····· 9

2. 등교 시 ····· 10

3. 등교 후(수업 중) ····· 11

4. 학교급식 운영 ····· 12

Ⅳ.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13

Ⅴ. 확진자 발생시 대응 ····· 15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18

▷ 참 고 ◁

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위한 추진사항 점검항목 ····· 20
2.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 21
3.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24
4. 학교 소독 강화 방안 ····· 26
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29
6.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30
7. 학생 및 학부모 준수사항 ····· 32
8.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 34
9. 감염병 예방수칙 ····· 36
10. 코로나19 행동수칙 ····· 37
11. 코로나19 학교생활 수칙 ····· 38
12. 유치원 생활방역 수칙 ····· 39
1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 40
1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41
15. 코로나19 사례정의 ····· 42

▷ 서 식 ◁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 43
2.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의심증상자 관리 서식 ····· 44
3. 유증상으로 출근중지된 교직원 모니터링 서식 ····· 45
4. 방문자 관리 서식 ····· 4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코로나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3.25.)

□ 본 지침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역할**과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제시함

※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는 요약하여 제시(☞ 참고7. p.30)

2 기본원칙

□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출근)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의심증상자: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아이들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수업시작 전·후,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조성 (단, 실외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학교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등교수업 전 역할 숙지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위한 추진상황 점검항목(요약)** ☞ **참고1 (p.20)**

□ **등교수업 시작 전**

○ 학생간 접촉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운영방안 수립 및 교직원 교육(비대면)
※ 대면 교육시 '생활 속 거리유지' 실천이 가능한 인원 단위로 실시

○ 방역물품 준비 및 학교전체 소독 완료

○ 의심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확보

○ 가정통신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 등 안내

□ **등교수업 시작 후**

○ 발열 확인, 호흡기 의심증상자 등 모니터링

○ 결석 학생에 대한 수업결손 대책 지원

□ 학교 내 '**코로나19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

* 대응조직 운영, 학생·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예방교육, 시설 방역 등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고령자(만65세)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학생 및 교직원 등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교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가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등교수업 시작 전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장**(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등교수업 시작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유증상 학생 발견시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7-4판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학생 및 교직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매일 실시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학교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하거나 자체 제작

□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 강화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기저질환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 매점, 청소, 경비 등 학교에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의 건강관리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가정 내 관리를 강화

* 가정에서의 체온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여부, 해외여행력 등 등 기록

※ 가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등교중지된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증빙 활용 가능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

○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일과 중 추가** 발열검사 실시(매일 총2회)

※ 신체활동(체육수업 등) 또는 식사 후 37.5℃ 이상의 발열이 측정된 경우 10~30분 정도 안정시킨 후 다시 체온 측정

※ 발열검사 외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요약)** ☞ **참고2 (p.21)**

□ **등교 시**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내(건물입구)에서 실시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 진료·검사 실시

□ **등교 후**

○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검사 실시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이동,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 진료·검사 실시(보호자 연락이 안 될 경우 교직원이 동행)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 의료기관 방문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 아님

② 동거인 중 상기 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가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학교장은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원 : 각종 휴가 / 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확인, 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교장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담 관리인* 지정,** 전담관리인은 해당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 (예시) 학생 :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 교직원 : 복무담당자

※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회(오전, 오후)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시킴

※ 수업 전, 수업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고, 기상 상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실 출입문 및 창문 상시 개방

- 기온 상승으로 **불가피한 경우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교실여건 고려)

※ 평상시 및 냉방기기 가동시 실외쪽 및 복도쪽 창문을 함께 열어서 환기

※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

○ 학교 내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 세척제**(액체 비누, 손세정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종이타월 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용 휴지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하도록 해야 하나, 만약 **기침시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교실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일회용 비닐봉투 등을 비치하여 기침시 활용한 휴지는 밀봉하여 버림

○ 학교 내,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더 자주 소독

※ 스스로 본인이 사용하는 책상을 수시로 닦도록 매일 지도·안내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 공적물량 배정)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1개

(책상 등 소독제, 알콜티슈 기준) 각 교실, 보건실,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충분량

※ 일반마스크(또는 면마스크)는 학생 1명당 2장 이상 확보(등교수업 시작전 비축)

※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치 장소는 교실 또는 보건실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

□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단,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출입기록을 작성**한 후 **방문 허가**

□ 학교별 학급수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

※ 상세한 출결처리 및 교수-학습 사례중심 가이드라인은 별도 안내

◈ (참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위한 학교 운영(예시)

○ 책상을 매일 수시로 닦기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 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벗고 증상이 완화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되,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조치하고 관련분야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도록 안내

※ 교사는 수업중 학생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가림막 또는 개인별 투명안면마스크 등 사용가능

○ 학생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괄 쉬는 시간 지양하고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정

○ 등·하교 또는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이용제한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업자료를 이용하는 교육활동 자제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별도의 공간은 **1층에 마련이 원칙.**

- 단, 교사 형태 및 교실 운영 방식 등 학교실정에 따라 1층 마련이 어려운 경우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선정

○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발견된 의심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방안 고려

Ⅲ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학생(학부모)가 등교수업 1주일 전부터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PC, 모바일 등)으로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시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학교) **가정통신**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하도록 **안내 및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 학교는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현황을 매일 집계(NEIS를 활용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할 경우 자동 집계됨)

-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 및 출근정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회(오전, 오후)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2 등교 시

○ (학교)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 실시

※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등교시"(요약) ☞ 참고2 (p.21)**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발열측정 전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해 등교시간, 출입동선 등 지정

* 두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내(교사 입구)에서 실시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일정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고막체온계 사용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가 없는 경우 고막체온계 사용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의심증상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 안내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확인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의심증상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적정거리 유지 후 동석

※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 **전담관리인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 전담관리인은 담당 학생·교직원이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회(오전, 오후)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3 등교 후(수업 중)

○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 **점심시간**(급식실 이동전) **추가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상태**를 **관찰**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완료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 중 추가검사 실시 및 수업시간 조정 가능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수업 중"(요약) ☞ 참고2 (p.21)**

○ 점심식사를 위해 급식실 이동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 비접촉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재측정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 추가 의심증상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확인

○ **발열검사** 또는 **교육활동 중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의심증상 확인**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도착시까지 동석, 적정거리 유지
※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 (전담 관리인) 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고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회(오전, 오후)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4 학교급식 운영

○ (운영방법)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고려** 및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

※ 교육청은 지역상황 및 학교 급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 적용(안내)

- 급식방법 예시(안)

배식형태	검토사항
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도시락 지참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학교 인근 대체식 제공업체 유무 및 위생점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
교실배식 전환	**반별 배식기구 및 운반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필요**
식당배식 유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 마련 필요** <예시1> 좌석배치 조정을 통해 학생간 거리두기 <예시2> 학년별·반별 시차를 두어 배식시간을 최대로 분산 <예시3> 식탁에 임시 칸막이 설치 ※ 지정좌석제 운영방안 검토 ※ 조리·위생·배식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인력추가 배치 등 검토

※ 필요시 등교 초기에는 간편식단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순차적으로 일반식단 제공

※ 간편식 등을 제공할 경우 한시적 1회용품 사용 및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적용 유예(학생건강정책과-2437, 2020.3.27.)

○ (급식실 방역강화) 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당 환기 강화**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하도록 지도
- **배식** 및 **식사** 중 **대화**를 **삼가**하고, **배식 대기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담임교사 등이 현장지도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해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급식종사자 발견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출근중단에 따른 급식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또는 비상시 학교급식 운영대책에 준하여 운영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착용**하여 오염방지

Ⅳ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학교) **등교 또는 출근중지 학생·교직원**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7-4판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격리대상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출근 중지**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

②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 해당 학생·교직원은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 개인단위 등교중지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강구

  ※ 등교중지 이후 복귀했을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강구

-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

②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일)동안 **등교·출근중지**

  * (예시) 최종 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참고) 의사환자 격리해제 및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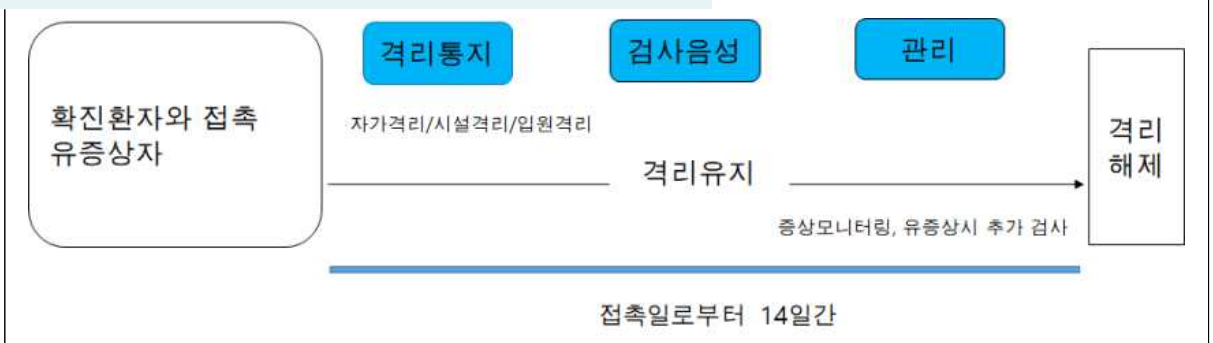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7-4판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출근 가능

○ **(교육청) 관내 인접 학교**(의심자의 가족이 재학 또는 근무 중인 학교 포함) 내 **확진환자 발생여부 파악** 및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강화**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V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학교)** 확진환자 발생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조치** 후 등교수업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정상운영**(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제외한 학생·교직원은 **등교 재개**

-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은 격리통지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등교·출근 중지)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참고)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7-4판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건강상태, 확진검사 유무 및 결과 등) 관리

☞ (참고)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능동감시중임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참고6 (p.30)**

○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소독안내(3판) 참조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 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학교장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 확인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교육청) 관할 보건소 연계 통해 **해당 학교에서 추진할 조치사항을 지원*하고,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 학교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조치 등

- 확진환자 재학 학교의 **인접 학교***(확진환자의 가족이 재학 또는 근무 중인 학교 포함) **소독 강화** 및 **발생상황 모니터링**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 확진환자 발생학교와 협의하여 **학생 등 심리지원**(SNS 활용 가능)

***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요약)** ☞ **참고8 (p.34)**

자가 격리 중인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지
○ 아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상황 설명
○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친구,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
○ 격리 기간 동안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
○ 격리가 끝난 후 등교 시 따뜻하게 환영, 학교 적응 지원

- 등교중지, 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에 대한 대책**(원격수업 등) **지원**

- 맞벌이가정 돌봄·저소득가정 자녀 급식지원 대책 강구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

○ **기숙사 운영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

※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실시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공기를 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입소생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숙소 **출입**을 **제한**

□ 의심증상자 발생시 조치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증상**을 **재확인** 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 보호자 인계가 어려운 경우 학교 담당자를 지정하여 선별진료소 동행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숙사 입소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등 대기 조치**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설운영 **정상복귀**

※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결과 음성인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의심증상자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기숙사 입소생의 거취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참고6 (p.30)**

○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참고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시기		추진 · 점검 사항
등교 수업 전	3.23 ~ 3.27	▪ 학교 관리조직 구성 등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보완
		▪ 모든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준비
		▪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 위생 방역물품(액체 비누 · 손소독제 · 체온계 등) 비치
		▪ 학년별 별도 수업 시종 시간 및 급식 시간 운영 계획 수립
		▪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수 · 학습, 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마련
		▪ 보건용 마스크(소아용) 및 면마스크(또는 일반마스크) 확보
		▪ 학교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특별 소독 완료
	3.30 ~ 등교 수업 시작 전까지	▪ 학생 간 거리 유지위한 책상 배치
		▪ 코로나 행동 수칙 교내 게시 및 교내 방송 사전 준비
		▪ 의심 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에 대한 학부모 안내
		▪ 휴업 대비 학습 지원 계획 수립(취약 계층 지원계획 포함)
		▪ 보건용 마스크(중대형) 및 면마스크(또는 일반마스크) 추가확보
		▪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방안에 대한 학부모 안내
등교수업 시작 후 (계속)		▪ 모든 학교 출입자 발열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면마스크(또는 일반마스크) 배부
		▪ 비축용 보건용마스크 소모분 확보
		▪ 매일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청소 및 소독
		▪ 학생 및 교직원 결석현황 일일 모니터링
		▪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평가 및 재조정

참고2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 등교시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교실 입실 전**,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ⅰ) 출입문이 다수인 학교는 학생들이 분산하여 등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단,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는 학교는 카메라가 설치된 출입문만 사용하여 등교하도록 조치

※ 체온계의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실외 온도가 외부사용가능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 발열검사 실시 장소를 교사(校舍) 입구로 이동

ⅱ) 학년별(또는 학급별) 등교시간을 조정하여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도

※ 통학버스 운행 학교는 통학버스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 **실시방법**

ⅰ) 요일별(또는 일자별) 발열검사 담당 교직원 지정 등 발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온계 사용방법 사전 교육 실시

ⅱ) 발열검사는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 미 보유학교는 고막체온계 사용하며,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열화상카메라로 대체 가능

ⅲ)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여부를 함께 확인

ⅳ)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후 대기하고,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ⅱ)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예시) 비접촉식 체온계 이용시 학생이동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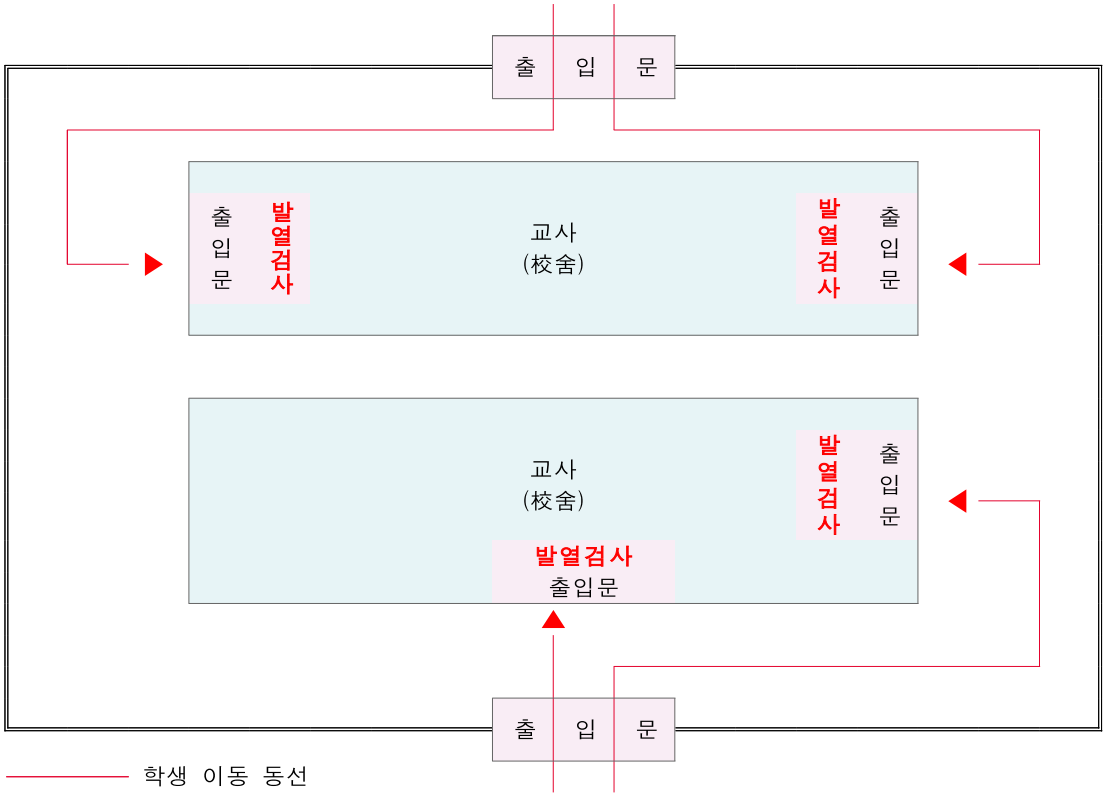

※ (예시) 열화상카메라 이용시 학생이동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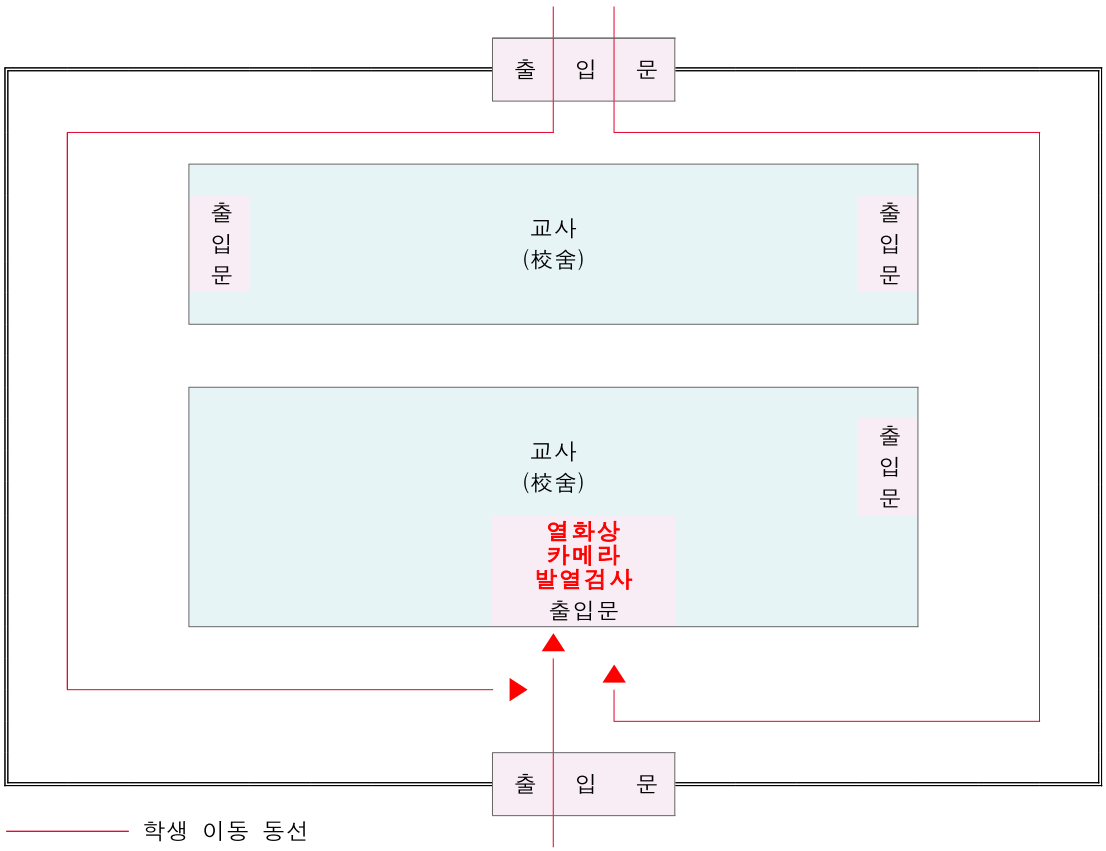

≪ 등교 후(수업 중)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 **실시장소** : **교실**(또는 교무실, 행정실 등)

○ **실시방법**

ⅰ)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는 점심시간 직전 수업 종료 후 **급식실 이동 전** 각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완료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ⅱ) 발열검사는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 미 보유학교는 고막체온계 사용하며,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ⅲ)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여부를 함께 확인

ⅳ)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ⅴ) 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가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인 경우 대체자 지정

참고3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귓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입니다.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4 학교 소독 강화 방안

<소독의 종류 및 적용범위 등>

구분		적용 범위	시행주체
정기 소독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전체 소독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전문 소독업체 위탁
일상 소독		학기 중 취약 시설 관리를 위한 소독	학교 자체 소독
임시 소독	행사 개최시 (시설임대 포함)	다수가 이용한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전문 소독업체 위탁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소독	

□ 정기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가급적 **등교수업 이전**에 **학교 전체**에 대한 **소독 완료** 하고, 이후 실시하는 정기소독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준하여 실시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4월~9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 **(실시방법)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상황 종료 이전 정기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 소독업체 선정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청

□ 일상 소독

○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 등**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임시 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또는 **행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노출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1회)

○ **(실시 방법)** 정기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학교 내 환자 발생시 소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소독지침(3판) 참조

□ 환자발생시 소독 방법

○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소독제를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 코로나19 소독안내(2-1판 참조)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엘리베이터 등

○ 시트,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독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참고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참고6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출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일반 원칙

○ 학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2.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3.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6)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 참고 : 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사항 사례 》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참고7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가.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나.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다.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참고8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감염원이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는 나를 더 잘 관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며 회복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 격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대비하세요.

상당한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불편이 따르는 격리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격리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유행 상황과 격리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행동지침을 명심하세요. 또한, 필요물품, 예정되어있던 일정 등 격리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감염에 대한 불안은 끊임없이 정보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정보의 선별에 우선순위를 두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며 SNS와 뉴스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무료함이나 수면의 어려움, 신체적인 긴장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현재 발생한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위험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불안감이 생기며, 이는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적인 긴장 반응을 유발합니다. 불안감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있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에 마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은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을 그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신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족과 친구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격리 기간 동안 기존의 친구들과의 교류와 학교생활 등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가족과 친구 등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6.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격리 기간은 동시에 학교생활과 기존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만 격리 기간 중에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7.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상의 생활과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8.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플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격리가 끝난 후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학교와 일상에 복귀하세요.

참고9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참고10 코로나19 행동수칙

참고11	코로나19 학교생활 수칙

참고12 유치원 생활 방역수칙

참고1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2020.3.2.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08조(벌칙) 제1항 제1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권태감
- 인후통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폐렴

참고1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28.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참고15 코로나19 사례정의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7-4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신고 대상 >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	+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6.5*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없음*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없음*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서식2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의심증상자 관리 서식

연번	이름	(소속)학년/반	날짜	시간	체온(℃)[1]	호흡기 증상[2]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09:00	37.5	-	-	-	√	설사	등교시 발견
				11:00	37.5	√	√	-		설사	수업중 발견

1)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학생은 설문을 통해 발열검사 실시자가 기록하고, 교직원은 직접 기록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서식3 유증상으로 출근중지 된 교직원 모니터링 서식

연번	성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	/	/	/
		1. 체온	오전 (:)	정상			
			오전 (:)	정상			
		2. 임상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증상					

연번	성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	/	/	/
		1. 체온	오전 (:)	정상			
			오전 (:)	정상			
		2. 임상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증상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서식 4 방문자 관리 서식

날짜	시간		이름	소속 / 연락처	방문 목적	방문 장소	체온 (℃)[1]	호흡기 증상[2]	특이 사항
	입(入)	출(出)							
4.6	10:30	11:00	000	교육부 / 010-0000-	회의	행정실	36.5	없음	

1)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